

입양서 미스와 가족체계이론

배태순**

I. 연구목적

II. 입양과 그 본질

1. 입양의 세 主役들과 입양서비스 : 입양아동, 生父母, 입양부모
2. 입양의 비밀과 개방 : 입양발전과 입양개방성
3. 한국의 입양실무와 미국의 입양실무

III. 가족체계이론과 입양

1. 체계이론 : 입양과 출산의 차이
2. 가족체계內의 입양개방 : 입양부모의 확대가족의 입양과정 참여의 필요성

IV. 한국입양부모의 확대가족의 입양참여와 그 영향

1. 한국 입양부모의 확대가족의 입양참여
2. 한국입양부모의 확대가족의 입양과정 참여여부와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태도차이
 - 1) 연구질문
 - 2) 연구방법
 - 3) 측정변수, 독립변수, 가설설정

V. 연구결과

VI. 결론 : 체계이론과 입양서비스

I.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目的)은 입양의 본질을 설명한 후, 가족체계이론에 준하여서 입양과 출산의 엄격히 다른 점을 논하여 입양은 출산과 동일시 되어질 수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입양의 발전은 입양개방의 필연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과,

* 본 연구는 1988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 입양개방과 입양발전과의 관계를 한국 입양부모의 확대가족(the adoptive couple's estended family)¹⁾의 입양과정 참여여부와 입양부모들의 입양태도 차이에서 보여주며, 한국 입양개방을 유도하는 전초작업으로서 한국입양부모의 대가족, 특히 양부의 대가족(the adoptive father's estended family)의 입양과정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II 입양과 그 本質

입양은 한 아동이 그의 태어난 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의 자녀(아동)가 되는 것이며, 입양서비스는 이러한 과정중에 제반되는 모든 정서적, 사회적,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사회사업서비스이다.

1. 입양의 세 主役들과 입양서비스

입양은 입양되는 입양아동과 이 입양아를 입양하는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를 포기하는 입양아의 生父母 등 三者팀이 그 主役으로 구성되는 사업(영역)이다. 입양기관의 진정한 암양서비스는 이 세 主役를 모두의 이익이 균형되게 이루어질 때이며, 어느 한편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서비스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팀의 이 관계는 자칫 相反될 수가 쉬운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²⁾ 입양과 관련하여 본 입양부모(adoptive parents), 입양아(adoptees), 그리고 生父母 (birth parents)의 이해관계는 아래와 같으며, 진정한 입양서비스는 이들 모두의 이익관계를 최대한 반영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 입양부모(adoptive parents 혹은 adopters)

입양부모들이 입양사업에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양육권을 가지는 유일한 부모라는 사실을 입양아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다.³⁾ 입양부모들이 입양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는 근본적 원인은 입양아동에 대한 자신의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감을 갖지 못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⁴⁾ 입양아동이 신생아가 아닌 연장 아동이라면, 이미 입양부모외의 다른

1) 여기서 확대가족은 입양부부 즉, 입양부모의 각자 태어난 본 가족을 뜻한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확대가족과 대가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B.J. Lifton, Lost and Found : The Adoption Experience, Bentan Books Inc, 1979.

3) R.Pannor and A. Baran, "Open Adoption as Standarded Practice", Child Welfare, 63 (3), 1984, pp. 245-50.

4) M. Elbow, "From Caregiving to Parenting : Family Formation with Adopted Older Children", Social Work, 31(5), 1986, pp.366-70. A. Kadushin, Adopting Older Childre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성인과의 부모적인 관계를 가졌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부모인 입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겠다. 반대로 입양아동이 갖난 신생아인 경우에는, 입양아동은 입양부모 외의 다른 成人과의 인간관계를 형성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를 자신의 유일한 부모로서 간주하게 될 확률이 많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입양부모로 하여금 끊임없이 生부모와 비교하게 되어 입양아동의 충성심과 애정을 놓고 생부모와 경쟁한다는 의식을 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 따라서 입양부모들이 입양한 아동에 대한 자신들의 부모로서의 정당성을 확립하기가 연장아동의 경우보다 덜 어렵게 될 수 있게 된다. 즉 입양아동에게 입양부모가 유일하게 보호양육권을 가진 부모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입양부모양육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부반응도 연장아동의 경우와는 달리 친부모에 대한 입양아의 감정과 연관시켜서 생각지 않게 되며, 이것은 입양부모의 입양아에 대한 부모로서의 정당성 확립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입양부모들이 입양아동의 生부모의 존재를 입양아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이다. 이런 연유로 입양부모들은 입양아의 生부모가 입양아를 포기한 후로는 입양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키로 원했고, 生부모가 입양아와의 일체접촉을 할 수 없도록 입양기관에 요구해 왔었던 것이다.⁶⁾ 그러므로 입양부모들의 입양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자신들만이 입양아에 대한 유일하게 자녀보호양육권을 가진 정당한 부모라는 것을 입양아동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입양부모들을 위한 입양서비스는 그들이 유일하게 生부모의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입양아를 양육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모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겠다⁷⁾

2) 生부모(birth parent)

자신이 낳은 아동을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직접 양육할 수 없게 되어 그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양육보호권을 포기하여만 하는 입양아동의 生부모들은 입양사업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들은 업연한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받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입양아를 입양에 포기한 후에는 입양아

5) M. Ward, "Parental Bonding in Older-Child Adoptions", *Child Welfare*, 60(1), 1981, pp. 24-34.

6) R. Dukette, "Value Issues in Present-Day Adoption", *Child Welfare*, 63(3), 1984, pp. 233-43.

7) A. Sorosky, A. Baran, and Pannor, *The Adoption Triangle : The Effects of the Sealed Record on Adoptees,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Garden City, N. J ; Anchor Press, 1978.

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케 하여, 입양아에게는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여 生부모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며, 생부모에게는 입양아의 행방과 성장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입양아의 생사여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입양실무는, 생부모들에게는 그들이 한 인간을 낳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생부모와 입양아의 혈연적인 관계를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구인 것이다.⁸⁾ 생부모들에게 이러한 혈연적인 관계를 철단토록 요구하는 입양실무 배경에는, 사회의 성 규율을 어긴 미혼모들에 대한 도덕적 결책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할 수 있겠다. 즉 사회가 허락치 않은 혼외 관계를 가진 사람들—생부모, 특히 미혼모—의 관심사엔 귀 기울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허락한 정당한 혼인관계를 가진 입양부모의 관심사를 입양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대부분의 생부모들이 입양사업에서 원하는 것은 엄연한 혈연관계의 존재를 없었던 것처럼 강요받지 말고, 그들이 포기한 입양아동의 생사여부와 그들의 복지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포기한 입양아동을 실체로 보거나, 혹은 다시 결합하여 하거나 혹은 아동의 생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생부모들에게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과 떨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그러나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그들이 포기하여야만 했던, 그들이 낳았던 아동의 복지에 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¹⁰⁾

3) 입양아동(adopted children 혹은 adoptees)

자신의 태어난 가정을 떠나야만 하는 입양아동의 관심사는, 그의 전전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영구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모든 개인은 자신의 태고난 유전적인 기원과 혈통에 관해 알기를 원한다.¹¹⁾ 이러한 소망은 깊은 심리적, 정서적 욕구에 기인되며, 이것은 자신의 근원—뿌리(roots)—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이며, 존재적 지속성을 위한 욕구라는 것이다.¹²⁾ 이것은 입양아동들도 다른 친자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물학적 기원과 혈통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입양부모가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숨기고 입양부모 자신이

8) Dukette, Ibid. 1984.

9) D. Kirk, Shared Fate : A Theory and Method of Adoption Relationships, Rev. ed., Publications, 1984.

10) Sorosky, Baran, and Pannor, Ibid. 1978.

11) Dukette, Ibid. 1984.

12) F.Colen, "Family Ties and Child Placement" , Family Process, 17, 1978, pp. 289-311.

출산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입양아에게 그의 진정한 유전적 기원과 혈통에 대해 알 권리 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혈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기본적 욕구이자 권리이며, 입양아라고 해서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입양부모의 회망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입양의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양부모는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아의 유전적인 배경(혈통, 근원)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배경을 알 기본적 권리 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입양아에게는 자신의 유전적인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성장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입양부모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 확신을 받는 것이 입양사업에 있어서의 그의 관심사라 할 수 있겠다.¹⁴⁾

2. 입양의 비밀과 개방 : 입양발전과 입양개방성

입양의 비밀성이主流를 이루는 일양실무에서는 입양의 비밀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유형의 아동들만이 입양가능한 아동들로 간주하게 된다.¹⁵⁾ 즉 건강한 신생아(新生兒)만이 입양할 수 있는 아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아동은 그 신체적 특이성 때문에 남의 눈에 쉽게 뜨이며, 남의 이복을 쉽게 끌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입양부모와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닌 아동은 이런 이유로 입양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신생아가 아닌 아동인 연장아동의 입양은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신생아가 아닐 경우 남들에게 자신이 낳은 아동처럼 가장하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¹⁶⁾ 즉 갑자기 갓난 아기가 아닌 아동을 갖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그 아동이 입양부모가 낳은 아동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입양자들은 입양의 비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연장아동들의 입양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양의 비밀성을 유지시키는 입양실무가 계속되는 한은, 오로지 입양비밀이 가능한, 즉 남에게 입양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유형의 아동들만이 입양부모들이 원하는 입양대상 아동

13) Lifton, Ibid, 1979.

14) Sorosky, Baran, and Pannor, Ibid, 1978.

15) Kirk, Ibid, 1984.

16) Ibid

들이 되게 된다. 따라서 비밀성의 입양실무가 계속된다면, 입양의 비밀성을 지키기에 어려운 특성을 지닌 아동들인 장애아동들—정신적인 것과 신체적 장애를 모두 포함—과 신생아가 아닌 연장아동들의 입양가능성은 계속 어렵게만 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의 발전은 기대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입양의 발전은 모든 형태의 아동들이—즉 정신지체아, 신체장애아, 연장아에 상관없이—입양이 가능한 아동으로 간주되며, 입양 가정을 발견할 수 있을 때이다.¹⁷⁾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아동들의 입양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비밀성은 지양되고 입양부모들이 입양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입양개방의 실무가 실현되어져야 한다. 즉 입양개방성이 보편화가 되기 前까지는, 남들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지닌 아동들과 연장아동들의 입양은 힘들게 된다는 뜻이며 따라서 입양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므로 입양의 발전은 입양개방성을 전제로 하게 됨을 알 수 있겠다.¹⁸⁾

3. 한국의 입양실무와 美國의 입양실무

한국 입양부모들의 약95%가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동들만을 입양하고 있다.¹⁹⁾ 즉 他人들에게 입양 사실이 밝혀질 염려가 적은 아동들만을 입양한다는 것이다. 한국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을 자신이 낳은 친자로 호적에 입적시킨다. 또한 한국입양기관은 미국의 입양기관과는 달리 입양자들에게 입양아에게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실제로 입양기관은 입양부모들의 입양비밀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예를 들면, 가장 임신을 하고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해 입원한 입양모에게 신생아를 안고 간다면, 아동입양후에 가정방문을 입양부모의 요청에 의해 가지 않거나, 혹은 가더라도 사회사업가로서의 신분을 감추고 知人(친구)등의 자격으로 가정방문을 가는것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입양부모들은 아동을 입양한 후 즉시 아무도 입양을 알아채지 못할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을 많이 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입양부모들은 입양아의 生부모가 입양아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또한 입양아에게도 입양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언젠가는 입양아의 生부모에게 입양아의 예정과 충성심을 뗏길 것이라는 심리

17) A. Kadushin, Child Welfare Services, 3r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80.

18) Pannor and Baran, Ibid, 1984.

19) 국내四大입양기관의 하나인 본 연구자로 수집기관의 일반자료와 국내최대 입양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적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20여년 전의 美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한국 입양은 사회가 허용치 않는 혼외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인 입양아의 생부모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자녀를 생산양육하도록 사회로부터 허락을 받는 혼인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을 기를 수 있는 정당한 혼인관계를 가진 가정에 아동을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인 것이다.²⁰⁾ 또한 포기되는 아동, 즉 입양아의 입장에서도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질책받는 혼외관계와 연관되어져서 그에 상응하는 낮은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정당한 혼인관계를 가진 입양부모에게 탄생되었다고 사회에 알림으로써 혼외관계와 연관되어진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입양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¹⁾ 그러므로 입양아동에게 그의 입양사실을 감추는 것이 입양아의 복지에 反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주장이 현재의 한국입양실무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현재의 한국입양실무는, 20여년 전의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에게 해당되는 혼외관계(out of wedlock)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많은 상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즉 미국의 경우도, 입양아와 입양아의 生부모의 입양과 관련된 그들의 진정한 권리에 대해서 재고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성인이 된 입양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위한 단체조직적인 운동 및 활동들이 있었고, 또한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태도의 완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완화되기 前인 1970년代초까지 입양이나 입양아의 생부모, 특히 생모인 미혼모들의 진정한 권리은 고려되지 않았었다 ; 입양아의 유전적 근원에 대한 정보는 폐쇄되어 입양아에게 공개되어지지 않았었다. 입양아가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빨리 흡수되기 위해서는 입양아의 本來의 生父母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여 멀리하게 하는 것이 그의 복지를 위해 최선이라는 이론이 그 당시 미국입양실무의 主流를 이루었었다.²³⁾ 그 결과 입양아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지시는 하나, 입양아에게 그의 유전적인 신원배경은 밝히지 않는 폐쇄적인 입양실무를 행했었다. 즉 일단 입양과정이 종결되면 입양아의 유전적인 배경은 통합폐쇄되어 주거지에 해당되는 법원에 보존되어 왔다. 성인이 된 입양아동들의 단체조직적인 운동은, 입양법에 의하여 통합폐쇄되어 成인이 된 입양아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자신들의

20) Dukette, Ibid, 1984.

21) Kirk, Ibid, 1984.

22) Lifton, Ibid, 1979.

23) Dukette, Ibid, 1984.

생물학적 근원과 혈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²⁴⁾ 지금도 계속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美國에서 점점 더 많은 州(현재는 23주)가 성인이 된 입양아들에게 生父母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신들의 입양되기 전의 이름 등에 접근을 허용하는 입양법으로 바꾸고 있다²⁵⁾ 또 한 입양사업에서, 입양아와 生父母의 권리에도 중요성을 부여하는 입양서비스로서의 전환에 이러한 성인입양아들의 조직적인 운동과 활동이 큰 역할을 해왔다 할 수 있겠다.²⁶⁾

한국입양실무는 미국의 70년代초와 마찬가지로 입양부모중심적인 입양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입양이 단순히 한국입양부모들의 불임문제 해결과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혼외출산의 사생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생아인 입양아와 혼외출산이 당사자인 생부모들의 권리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입양실무는 입양의 세 主役들의 권익을 공평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 입양아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에 접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을 포기하는 生부모들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조사(home study)에서 입양 가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입양부모들 中에서, 포기하는 자신의 아동을 위한 입양부모를 선정하기까지 한다.²⁷⁾ 이렇게 함으로써 生부모, 특히 生母로 하여금 자신의 아동의 인생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어 포기하는 고통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生母와 입양부모는 입양아의 복지에 관해 서로 서신연락을 하는 것까지도 약속한다.²⁸⁾ 입양부모들은 입양아에 대해 유일하게 보호양육권을 가지는 부모이다. 그들은 입양아의 生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들의 아동포기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쟁심 없이 입양아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데에 동의한다. 현재 미국입양실무는 종전의 비밀과 폐쇄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하겠다.

24) Lifton, Ibid, 1979.

25) National Committee for Adoption, Adoption Fact Book; United States Data, Issues, Regulation, and Resources, Washington D.C. ;National Committee for Adoption, 1985.

26) Pannor and Baran, Ibid, 1984.

27) A. Fish and C.Speirs, "Biological Parents Choose Adoptive Parents; The Use of Profiles in Adoption", Child Welfare, 69(2), 1990, pp. 129 - 140.

28) Ibid.

III. 가족체계이론과 입양

1. 체계이론 : 입양과 출산의 차이

체계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하나의 큰 생태체계의 한 부분으로서도 존재한다 는 것이다. 또 여기서 생태체계는 개인의 태고난 유전적, 혼가족 그리고 대가족 체계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적 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²⁹⁾ 즉 한 개인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의 부분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은 탄생할때 이미 한 체계의 일 부분으로서 태어난 것이다; 그는 그의 태고난 유전적, 혼가족 및 대가족체계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가 그의 태어난 가족체계를 마나서 새로운 가족체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입양아는 그의 태고 난 그 以前의 생태체계—生父母—를 새로이 속하려고 하는 그의 現 생태체계—입양부모체계—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³⁰⁾ 즉 입양아는 자신의 태고난 유전적체계, 혼가족 및 대가족체계를 밀살시키고 새로운 입양부모 가족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고난 생태체계를 지난체 새로운 생태체 계인 입양부모 가족체계로 옮겨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관심에서 볼 때에 입양아는 다른 두 체계의 결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입양이란 서로 다른 두 체계의 결합을 뜻한다 하겠다. 즉 입양은 서로 다른 두 체계가 관여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입양서비스의 대상은 두 체계란 것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것은 입양아가 입양부모의 親子와는 그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입양아는 두개의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反해 親子는 오로지 그가 태어난 한 체계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양아가 以前에 속했던 체계와의 연관성과 영향력등은 부인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

입양아의 모양(생김새). 입양부모와 다른 신체적 및 의학적인 특성은 바로 그의 이전체계와의 관계와 영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체계의 결합체인 입양아를 오로지 입양부모 가족체계인 한 체계에만 속했을 뿐인 親子로 간주하여 양육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현실인 입양아의 이전

29) C.Meyer, (ed), Clinical Social Work in The Eco-System Perspective,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A.Hartman and J. Laird(ed.s), Family Centere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Free Press, 1983.

30) S. Bradbury and M. Marsh, "Linking Families in Preadoption Counseling; A Family System Model", Child Welfare, 67(4), 1988, pp. 327 – 335.

의 생태체계를 부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엄연한 사실이 부인될 때에는 문제발생의 가능성은 존재케 되는 것이다. 입양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바로 이 입양부모의 입양아의 이전 체계를 인정치 않으려 하는 데에 기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체계이론은 입양아동은 입양부모가 탄생시킨 親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제시해 준다 하겠다. 즉 입양과 출산의 차이는 근본적(根本的)인 것이며 결코 同一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이 체계이론은 명백히 밝혀준다 하겠다.

2.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 입양부모의 확대가족의 입양과정 참여의 필요성

체계이론의 관점은 체계내의 한 구성원의 행동 및 변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한 구성원의 문제는 다른 구성원에게 반사된다는 것이다.³¹⁾ 이 어론에 의하면, 입양아가 그가 속했던 가족체계를 出하여서 새로운 가족체계로 들어가는 과정은 다른 두 개의 체계—생부모체계와 입양부모체계—를 필연적으로 혼들어 놓게 되며 이 과정에 수반된 변화에 반응케 만들다는 것이다.

입양아의 생부모 체계는 한 구성원을 상실하는 변화에 반응할 것이며, 입양아의 입양부모체계는 새로운 구성원을 맞아들이는 변화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입양아의 생부모체계에서의 한 구성원의 상실은 비탄을 초래하며 이것은 생부모의 자녀를 포기할 때의 슬픔으로 나타난다.³²⁾ 입양아의 생부모 가족체계는 이러한 상실에서 오는 비탄감에 대처하여 체계내의 안정된 계통합을 갖기 위해 반응할 것이다. 이 때 생부모 체계내의 대가족은 체계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반응)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부모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원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구성원의 상실에 대한 고통은 전 가족이 함께 나누며 포기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확신을 생부모에게 줌으로써 정서적 지원을 제공케 된다.³³⁾ 또한 입양부모체계는 새 구성원을 그들의 체계에 맞이하여 통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새 구성원을 맞을 준비단계적인 정서적 과업을 잘 수행한 가족체계일수록 입양아의 체계진입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양가족 체계의 대가족은 입양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체계가 된다.³⁴⁾ 새 구성원을 맞이하

31) M.Rodway, "Systems Theory", in F.Turner, (ed), Social Work Trea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88, pp. 514-539.

32) Broadbent and Marsh, Ibid, 1988.

33) Ibid

기 위한 정서적 과업에 참여하는 대가족체계는 입양부모가 그들의 입양결정에 대한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양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입양부모체계의 대가족은 또한 입양아에게도 중요한 정서적 자원이 된다. 새 구성원을 맞이하려는 전체계의 노력은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입양과 연관된 과정의 정보를 후에 입양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출처(resources)가 될 수 있는 것이다.³⁴⁾

체계이론관점에서 볼 때에, 진정한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체계內의 개방성은 필연적인 것이 시사된다. 특히 입양아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의 두개의 체계의 존재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명백해진다. 엄연한 진실이 한개인에게 부인된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공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美國의 성인입양아들이 직면했었던 문제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은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 왔으며 많은 성공을 거두어 왔다).³⁵⁾

입양가족체계內의 입양개방에 의해서 입양부모의 확대가족이 입양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입양부모가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가족구성원인 대가족이 입양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다. 이것은 입양아가 자신에 대한 두 체계의 결합을 알 수 있게 되는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양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음으로 해서 자신에 대한 진실이 왜곡될 때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문제발생의 확률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예를 들면, 갑자기 자신의 입양에 대한 진실을 가족체계 외의 他人에게서 듣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고통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입양의 본질에 입각한 진정한 입양서비스제공을 위한 일차적 작업으로서 입양부모 대가족의 입양과정참여는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IV. 한국입양부모의 확대가족의 입양참여와 그 영향

1. 한국입양부모 확대가족의 입양참여 : 가족체계內의 입양개방

한국의 입양부모들 중에는 입양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 위하여 심지어 가

34) Ibid

35) P. Sachdev, "The Triangle of Fears:Fallacies and Fact," *Child welfare*, 68(5), 1989, pp. 491-503.

족체계內의 구성원인 자신들의 대가족(extended family)에게조차도 입양을 비밀로 하는 입양부모들이 있다. 反面에 입양을 비밀로 하려하나 자신들의 체계內의 대가족에게는 개방하여 대가족구성원을 입양결정과 과정에 참여시키는 입양부모들도 있다. 이들 체계내에 입양을 개방한 입양부모들은, 가족체계內의 구성원들인 대가족에게조차도 입양(수속)과정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입양을 밟고 있는 입양부모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입양을 입양자체로서 수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 입양부모들은 입양아의 태고난 체계를 부인하지 않고, 입양아의 두 체계의 존재성(결합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양아를 양육할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양아의 태고난 체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입양아에게 그의 다른 유전적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것이다.³⁶⁾ 즉 그가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양아에게 입양부모외에 또다른 한 세트(set)의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生父母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우리 한국아동을 입양한 미국부모들이 한국입양아에게 그의 한국가족, 한국文化 등에 관해서 알고 배워서 한국아동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입양아의 엄연히 다른 한 체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들인 것이다). 따라서 입양을 자신의 가족체계내에 개방하는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나 입양아 生父母의 입장에서 입양을 불려는 가능성이 더 많게 될 것이다.

反面에 자신의 체계내에서조차 입양을 개방치 않고 비밀로 行하는 입양자(입양부모)들은 입양아의 태고난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의 다른 유전적 체계를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부모에 관한 얘기도 일체 비밀에 불여지게 될 것이다 : 입양아가 마치 자신들의 체계내에서 탄생한 듯이 행동할 것이며 그에게 다른 한 세트의 부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입양아나 다른 타인에게도 부인될 확률은 높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2. 한국입양부모 확대가족의 입양참여여부와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태도차이

1) 연구질문

그렇다면 과연 위에 전개한 이론과 마찬가지로, 체계내에 입양을 개방한 한국입양부모들이 체계내에 입양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입양을 하는 입양부모들에 비해서 좀 더 입양의 본질에 입각한 입양태도를 가질 확률이 더 많은

36) Kirk, Ibid, 1984.

Dukette, Ibid, 1984.

것인가? 즉 좀더 입양아가 以前에 속했던 가족체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질문이며 焦点이라 하겠다.

2) 연구방법

연구샘플은 1986년 1월까지 1년 6여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연구자가 시카고大 박사학위논문 자료수집時에 이용된 샘플이다. 즉 서울에 위치한 국내 四大 입양기관中의 하나인 입양기관에 입양을 하기 위해 찾아온 한국입양가족들로부터 뽑았으며 입양과정 중 아직 입양아동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 입양부모들만으로 샘플을 제한했다. 연구샘플가족은 총 133입양가족이었으며, 이중 112가족이 부부모두, 5가족은 양부만, 그리고 16가족은 양모만 참석하여 참석한 양부들의 총 수는 117명이고, 양모들은 128명으로서 분석은 두 그룹 각각 따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입양가족들은 완전히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한 것이다. 즉 이 입양기관에 입양을 하기 위해 찾아온 입양가족과 이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사회사업가들이－세명의 여성－입양가족과 입양면접을 끝낸 후에, 그들에게 本 연구의 目的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해 본다. 이 때 그들의 참여여부는 自願的이라는 점과, 또 이것이 그들의 입양수속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제공된 그들의 정보는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며, 이를 위해서 사용된 방안을 설명한다: 즉 연구 매개체가 설문지로서 無記名이며, 면접자 없이 응답자가 직접기입하며, 기입이 끝난 후엔 가죽단위로 주어진 큰 봉투에 설문지를 넣고 완전히 봉하여서; 本 조사자의에는 아무도 봉투를 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입양가족이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내면 위커－사회사업가－로부터 연구설문지를 받게 되며, 위커가 면접실을 나간 후에, 입양부부는 계속 남아서 설문지를 기입 완성하였다.

이런 절차로서 총 133 입양가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샘플의 자기선택 (self-selection)에 대한 우려성을 없애고 샘플의 대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샘플입양가족들과 이 입양기관의 일반입양가족들의 사회인구적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비교결과 샘플이 기관의 일반입양가족들을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샘플이 선택된 이 입양기관의 입양부모들이 어느정도 국내전체 입양가족들을 대표할 수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이 입양기관의 일반입양부모들의 사회인구적 특성을 다른 국내최대 입양기관의 입양부모들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비교해 보았다. 비교결과 두 기관의 입양부모들의 사회인구적 특성이 아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샘플의 사회인구적 분포를 보면 먼저 직업면에서 양부들이 전문직이

〈표 1〉 연구샘플의 사회인구적 문포

직업	양 부		양 모	
	No	%	No	%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직				
준전문직, 기능직	18	15.5	0	0.0
사업주	37	31.9	8	40.0
사무직, 세일즈맨	5	4.3	3	15.0
운전업(택시, 버스)	6	5.3	0	0.0
기능공, 준기능직	6	5.3	4	20.0
서비스업	0	0.0	0	0.0
막노동업	2	1.7	1	5.0
합 계	116	100.0	20	100.0
미지수	1	—	1	—
종교				
기독교 : 신교, 카톨릭	42	35.9	58	45.7
불교	29	24.8	34	26.8
종교없음	46	39.8	35	27.6
합 계	117	100.0	127	100.0
미지수	1	—	1	—
교육				
고졸이하	24	20.4	48	37.5
고 졸	47	40.1	59	46.1
4년미만의 대학교육	7	6.0	6	4.7
4년제 대학졸	27	23.2	14	10.9
대학원이상 교육	12	10.8	1	0.8
합 계	117	100.0	128	100.0
나이				
24세 이하	0	0.0	5	3.9
25~29	17	14.5	37	28.9
30~34	43	36.8	61	47.7
35~39	42	35.9	22	17.2
40~44	13	11.1	3	2.3
45~49	2	1.7	0	—
50세 이상	0	—	0	—
합 계	117	100.0	128	100.0

연구샘플의 사회인구적 분포

부 부		
	No	%
양부의 월수입		
199,999이하	1	0.9
200,000~349,999	32	27.4
350,000~499,999	36	30.8
500,000~649,999	28	23.9
650,000원 이상	20	17.1
합 계	117	100.0
미지수	1	
자녀수		
무자녀	106	90.6
1자녀	6	5.1
2자녀	5	4.3
합 계	117	100.0
입양횟수		
첫입양	114	97.4
두번째 입양	3	2.6
합 계	117	100.0

나 기술적 혹은 행정적 및 관리적 직업분포가 37%로 가장 많고(표 1참조) 다음이 자기사업을 운영하는 그룹으로서(상인들 포함) 31.9%의 분포를 보인다. 양모들 총 128명 중 21명(16.4%)이 가정외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도했는데, 그 중 흥미롭게도 40%가 사업의 소유자(상점운영 상인포함)로 나타났다. 종교는, 샘플양부중 39.8%가 종교에 없으며 35.9%가 기독교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모중에는 기독교가 45.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은 양부와 양모 모두 고등학교졸업자가 40.1%와 46.1%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샘플의 나이분포는 양부중 72.7%와 양모중 64.9%가 30代로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양부들은 오직 14.5%가 20代인데 비해 양모들은 다소 높은 32.8%가 20代였다. 이 기관의 일반입양가족분포는 양부들의 평균나이는 34.5세이며 그 중에 반이 34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모들은 평균나이가 30.6세이며 그 중의 반이 30세 이하로 나타났다. 수입분포는 샘플의 가장 많은 수인 30.8%가 35만원 이상과 5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며, 17.1%가 65만원 이상의 수입임을 나타냈

다. 기관의 일반입양가족들의 수입분포는 양부들의 평균 月수입이 44만 6천원이며 그 중 50%가 4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가족의 자녀 수에 대한 분포를 보면, 샘플의 양부들은 90.6%가 無子女로 보도했고, 2.6%가 두 번째 입양으로 보도했으며, 기관의 일반입양가족들도 89.6%가 무자녀였으며, 이들중 4.2%가 두번째 입양이었다. 따라서 대강 적어도 93%이상의 입양가족들이 불임인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고 하겠다.

연구매개체로 이용된 무기명 자기행정설문지 작성은 문헌참조, 한국문화의 이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기 行한 두번에 걸친 사전검사(prettest), 한국입양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면접과 상담 등의 복합적 노력의 결산이었다. 113개의 主질문들이 미국에서 70年代 初에 美원주민아동들을 입양한 백인가정들의 입양태도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질문으로부터 활동되었으므로 그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行한 두 차례의 사전검사와 측정에 사용된 질문이 직접적이고 분명하여서 곡해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각각 그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하겠다.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신빙성은 설문지의 질문이 분명했고 오해를 초래하지 않아서 응답자가 시종일관적으로 답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뢰도가 높다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은 유사한 두 질문—입양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입양부모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감지해 낼 수 있는 질문들—인 입양동기와 입양정의에 관한 질문에서 보여준 응답의 높은 상관관계($r = .49$)에서 연구매개체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주었다 하겠다.

3) 측정변수

한국입양부모들 中에서 가족체제內에 입양을 개방한 입양부모들이 체계 内에 입양을 개방하지 않은 입양부모들에 비해서 입양아의 태고난 그의 以前의 체계를 인정하는 입양태도를 가질 확률이 더 많은가? 라는 질문을 조사하기 위해 측정된 세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연장아동입양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양태도 :

입양부모들은 연장아동(older children)³⁷⁾ 의 입양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꺼려하고 있다.

37) 여기서 연장아동이란 나이가 든 아동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입양에서는 만 2세 이상의 아동들이 연장아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는 입양되는 아동들의 평균연령에 따라 이 개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입양시 아동들의 평균연령이 만 5세 정도인 미국에서는 만 3세 아동에 대해 연장아라는 개념은 미약할 것이다. 반면 입양되는 아동들의 평균연령이 만 5개월 정도인 한국에서는 겨우 18개월된 아동이 연장아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첫째, 입양아동의 나이가 出產時와 같지 않으므로 입양부모가 입양을 통해서라도 출산과 같은 경험을 가지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³⁸⁾ 이것은 입양부모가 입양아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남에게 얘기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하겠다.

8둘째, 연장입양아(adopted older children)는 입양부모에게 입양되기 前에 이미 다른 부모역할을 한 성인들과 정서적 인간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³⁹⁾ 이것은 입양부모가 입양아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확신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확신감은 성공적인 부모역할수행의 주요 요소이다.⁴⁰⁾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감이 결여될 때에 자녀 양육은 어려움에 봉착케 된다(반항하는 10代자녀양육이 어려운 것은 자녀가 반항할때 부모로서의 확신감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신생아를 입양했을때 입양부모는 쉽게 자신이 아동의 부모라는 확신감이 설 수가 있다. 왜냐면 신생아는 음식(자양)과 사랑을 제공하는 부모에게 쉽게 반응하여 부모로 하여금 아동에게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장 아동은 입양부모를 만나기 以前에 이미 부모역할을 제공한 다른 成人과의 관계와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다.⁴¹⁾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미혼모로서 더 이상 혼자 기를 수 없어서 포기한 부모, 혹은 질병으로 아동을 포기한 부모, 혹은 양육을 원치 않아서 포기한 부모 등 다양한 이유로 生부모와 떨어져야만 했던 연장 아동(older children)은 이러한 이전의 부모와의 인간관계 상실에 대한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정을 정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입양부모와의 새로운 관계, 즉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성공적인 입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연장아동입양을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이러한 아동의 상실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토록 도와줄 수 있어야만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부모가 불임인 경우에는 입양부모자신이 자신의 불임에서 오는 심리적 상실감에 직면케 된다. 즉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장해 온 후, 결혼하여 자녀를 정작 원할 때 자신이 자녀를 (의학적인 이유등으

38) Kirk, Ibid, 1984.

39) Adopting Older Children, Children, Cambridge, Mass:Harvard Common Press, 1978.

40) L.Katz, "Older Child Adoptive Placement:A Time of Family Crisis", Child Welfare, 56, 1977, pp. 165 – 171.

41) M. Gill, "Adoption of Older Children:The Problems Faced:", Social Casework, 59, 1978, pp. 272 – 278.

로) 낳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할 때 자신이 가지리라고 생각했던 상상의 자녀에 대한 심한 심리적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의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한 입양부모라야만이 입양아의 生父母에 대한 상실감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성공적인 입양을 가능케 한다.⁴²⁾

그러므로 연장아동의 입양은 신생아동과는 달리 입양아의 태고난 체계를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입양아의 태고난 이전의 가족체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입양부모만이 연장아동의 입양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족체계 内에조차도 입양을 비밀로 하는 입양부모들은 가족체계내에 입양을 알리면서 입양과정을 밟는 입양부모들보다 연장아동의 입양을 고려할 확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다.

(2) 養人에게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입양태도 :

입양부모가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입양의 生父母와의 유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뜻이다.⁴³⁾ 그러므로 입양을 출산처럼 가장하고 입양의 비밀을 절대로 유지하려는 입양부모는 입양아의 生父母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가족체계내의 입양을 개방한 입양부모는 체계내에서조차도 입양을 개방치 않고 비밀리에 입양과정을 밟고 있는 입양부모들보다 타인에게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높으리라는 점작이 될 수 있겠다.⁴⁴⁾

(3) 入養兒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입양태도 :

입양아의 태고난 생체계를 인정하는 입양부모들은 입양아에게 그의 입양을 알려주고 지속적으로(자유로이)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양아의 生父母체계를 부인하려는 입양부모들은 입양아에게 입양을 비밀로 하며 그의 입양에 대해서 전연 얘기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⁴⁵⁾ 그러므로 한 국입양부모들 中에서, 이미 그들의 대가족에게 입양계획을 알리고 입양과정을 밟고 있는 입양부모들은 그들의 대가족에게조차 입양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행하는 입양부모들보다 입양아의 태고난 체계를 인정할 확률이 더 많으며, 이것은 입양아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득립 변수로 책정된 입양부모가족체계내의 개방, 즉 입양부모의 확

42) Gill, Ibid, 1978.

Katw, Ibid, 1977.

43) Kirk, Ibid, 1984.

44) Ibid.

대가족구성이 입양부모의 입양계획에 참여하였느냐 하니냐의 여부는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

한국은 父系혈연을 중시여기는 家父長的인 父系사회이다. 전통적으로 시댁식구들의 가족의 代가 같은 혈통의 子에 의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댁식구들은 첫 부인이 아들을 생산치 못할 경우 후처나 첨을 두었으며, 그래도 적자를 얻지 못했을 경우 집안내의 같은 혈통內에서 양자를 하였다.⁴⁵⁾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혈연이 닿지 않는 무연관아동의 입양을 반대하였을 父系쪽 대가족, 즉 양부대가족에게 입양계획을 미리 알리고 수속을 밟는다면, 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공개해서 대가족들의 참여와 입양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된 질문을 다음과 같다. 먼저 양부가족들에 관해 묻는 질문들이 있은 후에, “그분들이(양부가족들이) 귀하의 입양계획을 아시는지요?”라고 물었으며, 그 응답항목으로 : 1) 예. 전부 아십니다 ; 2) 예. 일부는 아시고 일부는 모르십니다 ; 3) 아니오. 모두 모르십니다. 였다. 응답항목 1과 2를 답한 응답자는 알린것으로 간주했고, 답 항목 3인 “아니오. 모두 모르십니다”에 답한 응답자는 알리지 않고 양부 대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는 입양부모들인 것으로 간주했다.(약 40%정도의 입양부모들이 양부 대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입양과정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입양태도측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용된 질문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연장아동입양고려여부에 관해 이용된 질문은, “다음 연령의 아동들의 입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下에 질문된 세 질문-3살, 6살, 10살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각각의 질문-中에서 첫 질문인 “3살난 아동의 입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였다. 응답자들은 다음의 4개의 답 카테고리 中에서 하나를 선택토록 지시되었다. : 1) 아주 쉽게 입양을 고려하겠습니다 2) 약간 주저하면서 입양을 고려하겠습니다 ; 3) 상당히 주저하면서 입양을 고려하겠습니다 ; 4) 전혀 입양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 종속변수의 측정은 교차분석 (two-way)방법과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방법사용時는 답 항목 1·2, 혹은 3을 응답한 입양부모는 고려하는 (yes)것으로 간주하고, 답 항목 4를 응답한 입양부모는 고려할 의사가 없는(no)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정

45) 이광규, Kinship System in Korea, New Haven, Conn.:Human Relations Area Files Inc., 1975.

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답 항목 1과 2, 혹은 3을 응답한 입양부모는 고려의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다중회귀 분석시는 네 응답항목을 등간수준(interval-level)으로 간주하여서, 1점에서 4점을 간격을 가진 답으로 처리했다.

(2) 둘째, 남과 입양아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태도 측정은 다음의 질문이 이용되었다 : “만약 친척도 친구도 아닌 사람이 귀하아동의 입장에 대해서 알게 되어 물어본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응답자들은 다음의 4답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시되었다 : 예),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 2) 예, 사실대로 얘기하고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 3) 아니오,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4) 잘 모르겠습니다.

이 측정분석은, 교차분석시는 답항목 1항은 2를 응답한 입양부모들은 예(yes)로 간주하고 답항목 3을 응답한 입양부모들은 아니오(no)로 간주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시는 답 항목 1,2,3을 각각 등간수준으로 간주하면서 1점부터 3점의 스코어가 부여되었다. 답 항목 4는 “답없음(missing)”으로 처리하여 스코어가 부여되지 않았다.

(3) 세째, 입양아와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태도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이 이용되었다 : 1) 예, 꼭 알릴 예정입니다 ; 2) 예, 아마 알릴 것입니다 ; 3) 아니오, 절대로 알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 4) 잘 모르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시 각 답항목은 먼저번 것과 마찬가지로 1점부터 3점의 스코어가 주어졌고, 4번째답 항목은 “답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교차분석시 답항목 1혹은 2를 응답한 입양부모들은 예(yes)로 간주하였고, 답 항목 2를 응답한 입양부모들은 아니오(no)로 간주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사용 이유는 한국입양의 복합적인 성격상, 한국입양부모들의 태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추측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부가족 체계내의 입장개방이 입양부모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 중요성을 정하기 위한 유의도 (level of significance)는 좀 더 보수적인 유의미 수준인 $P<.1$ 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입양이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은 현상이므로 더 보수적인 유의미 수준을 사용하였을 경우 발견을 놓칠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멀 보수적인 유의미 수준을 사용하여 타입원에러(Type I Error)를 범했다해도 그 에러의 결과로서 실제 큰 비용이나 변화같은 것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낮은 유의미 수준인 $P(.1)$ 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양부의 대가족들에게 입양계획을 알리고 입양하는 한국입양부모들은 양부의 대가족에게 입양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입양하는 한국입양부모들에 비해서 : 1) 연장아동(3살난 아동)의 입양을 고려할 확률이 더 높으며 ; 2) 입양아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높으며 ; 3) 他人과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높다.

V. 연구 결과

나타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연장아동의 입양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양태도측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이 양부와 양모들의 연장아입양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양태도에 미치는 영향력(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	양부들			양모들		
	B	P	Cum.R ²	B	P	Cum.R ²
<u>문화적 요소</u>						
양부가 장남	-0.395	.7406	.0012	.103	.379	.0141
시댁이 입양계획안다	-.834	.0593*	.0371	-.253	.005***	.0768
남자조카 있음	-.0715	.5571	.0443	-.049	.673	.0785
<u>사회경제적 요소</u>						
기독교	-.1155	.2219	.0555	-.096	.292	.0968
교육	.0075	.9378	.0555	-.136	.148	.1186
나이	-.1933	.0406**	.0934	-.104	.242	.1291
수입	-.0695	.4746	.0978	-.001	.994	.1291
Source df			Mean Square	Source df		
F				F		
Value				Value		
Model 7			1.7192	Model 7		
			1.641	1.993		
			.1311	2.456		
			116	0.0219		
Error			106	13470		
			1.0480	Error		
			5878	116.811		
			N=113 ; R ² =.0978	59337		
				N=123 ; R ² =.1291		

*** = P<.01 ; **=P<.05 ; * = P<.10

먼저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보면(표 2참조), 양부들의 경우, “시댁이 입양계획을 안다”변수가 중요한 ($P=.0593$)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양부들 중에서 양부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공개한 양부들이 양부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공개하지 않은 양부들보다 연장아 입양을 고려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

양모들의 경우를 보면, 역시 “시댁이 입양계획 안다”의 변수가 중요한 ($P=.005$)것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이것은 가설했듯이 시댁식구들이 입양계획을 알고 있는 양모들은 시댁식구들에게 –양부의 확대가족–에게 입양계획을 알리지 않은 양모들보다 연장아동입양을 원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양모들의 경우 이 두 변수간의 관계의 중요성은 교차분석에서도 나타났다(표 3참조). 이것은 양부 대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이 특히 양모들의 연장아 입양고려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부계적·한국사회에서 일단 시댁에게 입양을 공개한 후에는 더 이상의 입양의 비밀성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입양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은 연장아동입양도 고려할 수 있는 태세가 되는 듯하다.

(표 3) 양모들의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과 연장아동입양고려와의 관계

시댁이 입양계획안다	연장아동입양고려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29	21	50
예	32	46	78
합계	61	67	128

Chi-Square=3.519, df=1, p=.061

Fisher's exact test (1-tail), p=.045

참고로 표 2의 다중회귀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해보면, 문화적요소로서 “양부가 장남”은 입양가족의 양부가 장남이나 아니나의 여부, “남자조카 있음”은 양부 대가족체계내에 남자조카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이며, 사회경제적요소로서 “기독교”는 기독교노인치 아닌지의 여부, “나이”는 만 40세(양모의 경우는 만 35세)이상이나 아니나의 여부, “수입”은 양부의 월수입이 65만원 이상이나의 여부를 나타낸다. 이 변수들은 한국입양부모들의 입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추측되었다. 이 변수들은 분석 때에 그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져(dichotomized), 점수 1점을 특성이 있는 경우, 점수 0점은 없는 경우에 각각 부여되었다.

2. 他人과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입양태도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도표 4를 보면, 양부들의 경우, “시댁이 입양계획안다”변수가 아주 중.R² (p=.006)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가설한 대로, 양부들 중에서 양부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공개한 양부들이 양부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공개치 않고 미밀리에 입양과정을 밝는 양부들 보다 他人과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

〈표 4〉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이 양부와 양모들의 他人과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입양태도에 미치는 영향력(다른 변수들이 통제 된 상태에서)

변수	양부들			양모들			
	B	P	Cum.R ²	B	P	Cum.R ²	
<u>문화적 요소</u>							
양부가 장남	-.1338	.2481	.0070	-.0976	.4427	.0058	
시댁이 입양계획안다	-.3409	.0006***	.1033	-.3773	.0001***	.1335	
남자조카 있음	-.2656	.0277**	.1390	-.0957	.4533	.1378	
<u>사회경제적 요소</u>							
기독교	-.1819	.0532	.1835	-.0313	.7514	.1456	
교육	-.1827	.0618	.2029	-.1178	.2402	.1526	
나이	-.1236	.1894	.2166	.1278	.1769	.1533	
수입	.1985	.0482	.2501	.0245	.7948	.1534	
Source df Mean Square			F-value	P	Source df Mean Square		
Model 7 2 0.19 - 4.287			0.0004		Model 7 1 3.35 - 2.667		
Error 90 470 -			06709		Error 103 .500 -		
			70363		85612		
N=97 ; R ² =.2501					N=110 ; R ² =.1534		

*** = P<.01 ; ** = P<.05 ; * = P<.10

(참고로 표 4에서 보여준 다른 중요한 변수들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한다면, 文化的요소 “남자조카 있음”변수의 중요성(p=.0277)은 양부집안에 남자조카가 있는 양부들은 양부집안내에 남자조카가 없는 양부들보다 입양에 대해서 얘기 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 “수입”변수의 중요성(p=.0482)은 예상과 반대방

향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수입이 비교적 높은 양부들이 수입이 낮은 양부들 보다 입양에 대해서 남과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다는 뜻이다.)

양모들의 경우도, “시댁이 입양계획 안다” 변수는 아주 중요한 ($p=.0001$)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이것은 양모들 중에서 남편의 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공개하고 입양하는 양모들은 남편 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공개치 않고 비밀리에 입양하는 양모들보다 입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他人*과 얘기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한국입양부모들 중에서 일단 양부의 대가족체계내의 입양을 개방한 입양부모들은 자신들의 아동의 입양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양부들, 양모들그룹 모두 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표 5, 6참조)

(표 5) 양부들의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과 남과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태도와의 관계

시댁(양부가족)이 입양계획안다	남과 입양에 대해서 얘기			
	아니오	예	모르겠음	합계
아니오	29	5	7	41
예	36	28	12	75
합 계	64	33	19	116

Chi-square=8.690, df=2, p=.013

답없음(Missing)=1

(표 6) 양모들의 남편학대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과 남과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태도와의 관계

시댁이 입양계획안다	남과 입양에 대해서 얘기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48	2	50
예	51	27	78
합 계	99	29	128

Chi-square=16.297, df=1, p=.001

Fisher's exact test (1-tail), p=.001

표 5는 양부들 그룹의 이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이며, Chi-square=8.690(df=

2, $p=.013$)으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준다. 즉, 자신의 확대가족에게 입양을 공개한 양부들이 확대가족에게 입양을 공개치 않은 양부들보다 남에게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

표 6의 양모들 그룹이 이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은, Chi-square=16.297($df=1$ 이며, $p=.001$)로서 이 두 변수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었다. 즉 남편 대가족체계내에 일단 입양을 공개한 양모들은 남에게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입양을 남편 확대가족 체계내에 공개치 않은 양모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것을 나타내 준다.

3. 入養兒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입양태도측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7)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이 양부와 양모들의 他人과 임양아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입양태도에 미치는 영향력(다른 변수들이 통제 된 상태에서)

변수	양모들			양부들		
	B	P	Cum.R ²	B	P	Cum.R ²
<u>문화적 요소</u>						
양부가 장남	-.0493	.7129	.0113	-.0280	.8379	.0002
시댁이 입양계획한다	-.293	.0035***	.1197	-.3527	.0006***	.1263
남자조카 있음	-.0589	.6666	.220	-.1103	.4261	.1320
<u>사회경제적 요소</u>						
기독교	-.1573	.1218	.1603	-.1051	.3141	.1527
교육	-.2629	.0125**	.2139	-.1473	.1788	.1748
나이	-.2365	.0156**	.2673	-.0143	.8869	.1757
수입	.0508	.6221	.2695	-.0169	.8718	.1759
Source df Mean F- P						
Square Value						
Model 7 1.368 – 4.268 .0005						
50006						
Error 81 .3206 –						
3039						
N=99 ; R ² =.2695						
Model 7 .7520 – 2.6527 .0156						
6635						
Error 87 .2835 –						
9055						
N=94 ; R ² =.1759						

*** = $P<.01$; ** = $P<.05$.

도표 7을 보면, 양부들의 경우 “시댁이 입양계획한다” 변수가 중요한 ($p=.0035$)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양부들 중에서 자신들의 대가족체계내에 입

양을 알리고 입양하는 양부들은 자신들의 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알리지 않고 입양하는 양부들보다 입양아와 후에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설한 대로 자신의 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알리고, 대가족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참여가 있는 가운데에 입양을 하는 양부들은, 자신의 대가족구성원에게도 입양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입양을 하는 양부들에 비해서 입양아의 태고난 생태체계를 인정하려는 태도가 더 강하다 하겠다. 즉 이것은 입양아의 이전의 체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입양아에게 그의 태고난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양태도를 말한다 하겠다.

양모들의 경우에도 (표7참조), 변수 “시댁이 입양계획한다”가 아주 중요한 ($p=.0006$)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모들 中에서 남편의 대가족 체계내에 즉 시댁식구들에게 입양을 알리지 않고 그들에게 비밀로 하면서 입양하는 양모들에 비해서 남편의 식구들에게 입양계획을 알리고 입양하는 양모들은 입양아와 그의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 되겠다.

이것은 父系的 혈연社會인 한국사회에서, 따라서, 입양부모의 생활에 특히 입양에 관하여 父母대가족의 영향력이 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일단 남편쪽 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알리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은 양모들은 입양을 출산처럼 동일시하려 하지 않고 입양으로서 인정하는 입양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다.

〈표 8〉 양부들의 대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과 입양아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태도와의 관계

양부가족이 입양계획한다	입양아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			
	아니오	예	모르겠음	합계
아니오	23	7	11	41
예	21	32	23	76
합계	44	39	34	117

Chi-square=10.853, df=2, p=.004

양모들의 경우 흥미있는 것은 “시댁이 입양계획 한다” 변수가 차지하는 변량 (R^2)의 양이다(표 7참조). 즉 변수 하나가 차지하는 변량의 양이 12.6% (.1263 - .0002)나 된다는 뜻이다(이 변수는 타인과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입양태도 측정 때도 12.8% (.1335 - .0058 = .1277, 표 4참조)의 많은 변량(R^2)을 차지 했었다). 이것은 한국의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입양으로서 인정하는 태도를 갖

게되는 데에는, 변수 “양부가족이 입양계획 안다”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교차분석(two-way)에서도 양부들 그룹, 양모들 그룹 모두 중요한 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8, 표9 참조).

양부들의 경우 (표 8참조), Chi-Square=10.853(df=2이며, p=.004)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양모들의 경우에도(표 9참조), 양부 대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과 입양아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태도는 중요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교차분석에서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는 Chi-square=21.649 (df=2이며, p=.001)로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9) 양모들의 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과 입양아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태도와의 관계

시댁이 입양계획안다	입양아와 입양에 대해서 얘기			
	아니오	예	모르겠음	합계
아니오	32	7	11	50
예	20	38	20	78
합 계	52	45	31	128

Chi-square=21.649, df=2, p=.001

연구결과는 입양부모가 체계내의 입양개방, 특히 부계적 혈연사회인 한국사회에서의 양부 대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은 한국입양부모들의 입양에 대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즉 체계내의 입양개방은 입양을 입양으로서 받아들이는, 즉, 입양아의 이전에 속했던 체계를 인정하는 입양태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VI. 결 론 : 체계이론과 입양서비스

체계이론에 준하여서 입양을 비춰볼 때에 입양은 결코 출산과 동일치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가를 제시해준다 하겠다. 즉 입양을 입양으로서 인정하여야 하며, 입양아를

마치 자신이 출산한 아동으로 간주하여 입양아의 타고난 이전의 체계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입양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러한 염연한 사실에 逆하여 행동하려 할때 생겨나는 것이다(입양부모의 불안감, 입양아의 혼동감, 生母의 포기한 아동의 生死여부도 모르는 고통 등).

본 연구는 한국의 입양부모들이 일단 자신들의 확대가족체계내에, 특히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양부 대가족체계내에 입양계획을 사전에 얘기하여 그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입양을 굳이 출산과 동일시하려 하지 않고 입양으로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입양태도를 가질 확률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입양아동의 以前의 타고난 체계를 부인하려는 입양의 비밀성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입양의 발전-입양의 본질에 입각한 서비스의 질과 수적 증가 모두-은 기대되어질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한 가족이 어떤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려 할 때는 그 가족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과 가족이 문제를 처리하여 가족의 타고난 장점을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기까지 되는 것이다.⁴⁶⁾

본 연구로서, 한국사회에서 양부 대가족체계내에 입양을 개방한 사실이 한국 입양부모들로 하여금 입양을 입양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이것은 한국입양의 오래된 비밀성에서 탈피하여 좀 더 개방된 입양서비스실무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입양부모들의 대가족, 특히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양부들의 대가족체계가 입양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하겠다. 그러므로 입양실무에서는 입양부모들이 확대가족체계의 입양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예를 들면, 양부대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을 입양가정조사(home study)의 필수적요소로 하여, 그 구성원의 한 명 내지 두 명을 입양과정에 포함시켜, 입양위커가 그들과 면접, 전화 등의 접촉을 갖는 것도 대가족체계내의 입양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46) L. Shulman, The Skills of Helping Individuals and Groups, Itasca, IL:FE Peacock Publishers, Inc., 1984, p. 158.